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취소소송 패소 관련 보고

〈2012.4.6 예산담당관〉

용강시범아파트 정리사업 관련 국유지(아파트 부지) 무단점유를 사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부과한 변상금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변상금 납부가 불가피한 바, 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 변상금 부과 사유

- 국유지에 건축된 용강시범아파트('71년 건축)가 재난위험시설 D급 판정을 받아 수용 후 녹지 조성 추진하였으나,
 - 아파트 건물 보상 : '08.8. ~ '10.4. / 철거·녹지조성 : '10.5. ~ '10.11.
- 市에서 건물을 보상하여 철거하기까지('08.8~'10.4), 국유지 위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무단점유 변상금 200백만원 부과 처분

※ 기존 거주민에게는 2000.1월부터의 국유지 점용료 부과

〈사업개요〉

- 위 치 : 마포구 용강동 396-7
- 사업규모 : 12,376 m^2 (7개동 245세대, 국유지 1,812 m^2 포함)
- 사업기간 : '08.4. ~ '10.11.
- 총사업비 : 45,378백만원(보상비 44,178백만원, 철거비 등 1,200백만원)

〈변상금 내역 (단위:원)〉

대상	원금 (A)	분납이자 (B)	연체이자 (C)	합계 (A+B+C)	납부기일
마포구 용강동 496-7외 15필지	157,906,560	0	42,114,690	200,021,250	2012.04.18.

□ 소송결과

- 市에서는 재난위험시설 D급 판정에 따라 건축물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재해대책 차원에서 점유하게 된 경우로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 대법원은 아파트를 긴급하게 철거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시 패소 판결 확정

※ D급 : 주요 구조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강 공사 필요

□ 검토의견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 최고 공문에 의거 납부기한이 2012.4.18일까지로 기한내 미납시 연체이율(12~15%)이 가산되므로 시급히 지급할 필요성이 있으며,
- 용강시민아파트 관련 별도 예산도 없고, 판결시('12.3.15)까지 지급 의무 발생도 예측하기 곤란하였으므로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건의

※ 일반회계 예비비 총 134,096백만원 중 잔여액 110,342백만원

- 보궐선거비용(218백만원, 집행), 산사태위험지역정비(23,536백만원, 예정)

〈 용강시민아파트 부지 현황 〉

